

정보통신부고시 제1995-121호

- 디지털방식을 이용하여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적 조건 -

무선설비규칙 제5조제11항·제104제2항·[별표1] 비고 제39호에 의거 디지털방식을 이용하여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적조건(체신부고시 제1993-96: '93. 11. 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5년 10월 2일

정보통신부장관

디지털방식을 이용하여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기술적조건 제2호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라. 기지국과 이동국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32MHz이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지국

채널중심주파수로부터 ±750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3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된 변조전력이 평균전력보다 45데시벨이상 낮을 것.

(2) 이동국

채널중심주파수로부터 ±900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3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된 변조전력이 평균전력보다 42데시벨이상 낮을 것.

마. 스푸리어스 발사강도는 3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된 최대출력 발사상태에서 평균전력에 비하여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기지국

(가) 869MHz이상 894MHz이하의 주파수대에서는 채널중심 주파수로부터 ±750KHz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5데시벨이상 낮고, ±1.98MHz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는 60데시벨이상 낮을 것.

(나) 869MHz이상 894MHz이하의 주파수대이외의 주파수대에서는 60데시벨이상 낮고, 43+10Log(PY)데시벨이상 낮을 것.

(2) 이동국

(가) 824MHz이상 849MHz이하의 주파수대에서는 채널중심 주파수로부터 ±900KHz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2데시벨이상 낮고, ±1.98MHz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는 54데시벨이상 낮을 것.

(나) 824MHz이상 849MHz이하의 주파수대이외의 주파수대에서는 43+10Log(PY)데시벨이상 낮을 것.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검정 신청중에 있는 장비는 이 고시에 의한 기술 기준을 적용한다.